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1. 12 선고 2024가단5281214 판결 [리스료 및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주식회사 C

2. D

변론 종결2024. 10. 22.

판결 선고2024. 11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,468,101원 및 그 중 132,930,854원에 대하여 2024. 7. 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신정민

별지